**내 용 증 명**

발신인 성함 : 김경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1, 304동 606호

 전화번호 : 010 - 4934 - 5438

수신인 성함 : 문소라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전화번호 : 010 - 4756 - 8307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1년 4월 17일 계약서에서 귀하(문소라 이하 '갑'), 본인(김경준 이하 '을')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사주 취득을 '갑'을 통해 '을'이 구매 하였고 보호 예수가 끝나는 시점인 2022년 3월 18일 '갑'이 소유한 '을'의 주식 770주를 판매 하여 계약서에 명시 된 '을'의 계좌에 2022년 3월 20일 입금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8일 '갑'의 회사에서 보호예수기간 만료가 2022년 3월 18일이 아닌 2022년 3월 19일로 변경이 되었기에 기존 계약서 4조 1항 중 일자 수정이 필요하였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 변경없이 2022년 3월 21일 매도 후 3월 23일 계약서에 명시 된 '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3월 23일 '갑'은 '을'에게 주식 770주에 대한 판매금액으로

총 80,272,500원을 입금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갑’의 주장은 판매한 날이 아닌

2022년 3월 18일 최저가인 1주당 139,000원 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양도세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한 명목으로 25%를 제하고 송금하였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근거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보호예수기간 날짜 변경으로 인한 상호합의하에 판매 및 입금 일자를 변경

하였기에 주식 판매금액을 기존 계약서상의 3월18일이 아닌 실제 ‘을’의

주식을 판매한 3월 21일의 시장가로 재 계산 요청.

2) 주식 판매 단가가 시장가가 아닌 최저가로 임의 계산하였기에 실제 '을'의

주식을 판매한 2022년 3월 21일의 거래 내역서.

3) '갑'이 임의로 양도세 및 각종 수수료로 25%를 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

3. 위 요청내용에 대해 내용증명 수취 후 D+3일까지 '을'에게 근거자료 제시 및

재 계산한 금액을 '갑'이 입금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을'의 주식판매금 입금

 계좌로 입금 할 것

혹 귀하가 본인의 요구 중 한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경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25일

발신인 김경준